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 . . (제 회)	

5 · 18 민 주 유 공 자 예 우 및
단 체 설 립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가보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5·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”을 추가하는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359호, 2026. 2. 19. 공포, 2026. 8. 20. 시행)됨에 따라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규정하고(안 제32조제2항), 5·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동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(안 제34조제1항)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기정예산에 반영되었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”란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.

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보훈병원”을 “보훈병원,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(이하 “공공단체의료기관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장은”을 “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은”으로 한다.

제34조제1항 중 “장은”을 “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은”으로 한다.

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진료의 종류 등) ①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32조(진료의 종류 등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”란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.</u>
<u>② · ③</u> (생략)	<u>③ · ④</u>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제33조(의료기관의 지정에 따른 위탁진료 등) ①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<u>보훈병원</u>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의료기관(이하 “위탁병원”이라 한다)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다	제33조(의료기관의 지정에 따른 위탁진료 등) ① ----- ----- <u>보훈병원,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(이하 “공공단체의료기관”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2. (생략) ② ③ (생략) ④ 보훈병원의 <u>장은</u>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,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되면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옮겨 입원시킬 수 있다. ⑤ (생략) 제34조(진료 비용의 감면) ① 보훈병원의 <u>장은</u> 법 제3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료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6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. ② (생략)	----- ----- --. 1. 2. (현행과 같음) ②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<u>장 또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의 장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⑤ (현행과 같음) 제34조(진료 비용의 감면) ① --- ----- <u>장 또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의 장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693